

## 1985년 ‘조-소 국경조약’ 분석

박 아 름\*

### 요약

---

1985년 북한은 소련과 국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해양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였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뤄진 ‘조-소 국경조약’의 발생 원인과 배경, 내용, 그리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의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대응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의 신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조-소 협력이 높아졌으며, 소련의 제안으로 국경조약이 체결되었다. 둘째, 국경 조약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으며, 체결과정에서 양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국경선 길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국경선과 해양경계의 설정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조약문 자체에 영공과 영해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포함한 상호 이용 여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국경조약이 발생한 시기 북한에서 해양분야의 활성화와 대외군사관계의 확장, 대외무역의 성장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소 국경조약’의 원만한 합의가 만들어 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룩된 성과들이었다. 이후 북한은 대(對)중동 미사일 수출 증대와 개도국과의 무역 증대를 통해 사회주의권 몰락의 충격을 완화하였다.

**주제어:** 북한, 소련, 동북아, ‘조-소 국경조약’, 조-소 군사협력

---

\* 동국대학교-서울 북한학과 박사수료, heeya803@naver.com

## I. 서론

북한은 1985년 4월 17일 소련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국경선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 국경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듬해인 1986년 1월 22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 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북한이 소련과 1957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국경문제조정절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30년 만에 체계적인 국경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조-소 국경조약’은 북한이 1962년 10월 12일 ‘조-중 국경조약’ 체결 이후 두 번째로 체결한 것인데, 무력충돌이나 외교적 마찰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과 소련의 국경선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1/13에 해당하는 길이로 지리적 경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군사적·외교적·경제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높다.

정희석은 국민국가가 여전히 군사력을 독점하고 최대의 폭력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문제를 배제하고는 현대국제정치를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국민국가 간의 국경은 국가적 내지 세계 정치적 규모의 정치·경제·군사·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형태의 통상, 국방·전쟁수행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안전보장의 여러 문제와 상호 관련되고 직결되어 있는 현실문제로 정의하였다(정희석 2002, 60).

1980년대 중반에 이뤄진 ‘조-소 국경조약’은 당시 북한의 『로동신문』에 조약 사실이 간단히 언급되었고, 국내외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하였으며, 연구 기관에서 평가와 예측을 내 놓았다. 하지만 추후 학계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활발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몇몇의 학자들이 국경조약의 원본을 입수하여 자료를 해제

하거나 법적 타당성을 평가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역사적·지리적·법적 분야로 한정되었다. 조약 체결 당시 긴장된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이 국경조약을 어떤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그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소 국경조약을 통일한국의 계승문제로 조명한 연구이다(노영돈·이현미 2010; 정인섭 2007). 둘째, 조-소 국경조약에 따른 ‘녹둔도’의 상실문제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안재섭 2004; 박종효 2010; 정인섭 2007). 셋째, 조-소 국경조약을 분계선 설정보다는 북한과 소련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양태진 1985).

본 연구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첫째, 조-소 국경조약은 왜 1980년대 중반에 체결되었는가? 둘째, 조-소 국경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조-소 국경조약이 북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따라, 1980년대 북한과 소련의 국경 조약이 체결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조약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경조약이 이루어진 1980년대 중반은 약 20여 년 만에 북한과 소련의 친밀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로 사회주의권 몰락 이전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대응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 II. ‘조-소 국경조약’ 체결 배경과 원인

1980년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출현하여 한·미·일 삼각동맹과 조·중·소 관계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사회주의권 동맹이었던 조·중과 조·소 관계의 변화와 중·소 대립과 화해는 동북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1970년대 이룩된 미·중 화해와 중·일

관계 회복은 소련과 북한을 고립시키는 양상을 보였으나, 미·소의 관계가 회복되는 큰 흐름 속에 북한을 제외한 소련,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대응의 특징은 화합과 갈등이 공존한 것이었다. 특히 조·소 국경조약이 체결된 1985년은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친밀해진 시기로 북한이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적 선택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1980년대 화합을 지향하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도 냉전시대 긴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 1. 동북아 화해와 긴장

1980년대의 동북아 정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고화, 둘째, 조·중·소 관계의 변화, 셋째, 한·미·일과 조·중·소 대립의 균열이었다.

첫째,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고화는 각국의 지도자와 관련이 높아 보인다. 1980년대를 맞아 세 국가의 지도자가 모두 새로 선출되었으며 6~8년이라는 긴 기간을 재임하였다. 1980년 한국에는 군부출신 ‘전두환 정권(1980~1988년)’이, 1981년 미국에는 공화당 출신 ‘레이건 정권(1981~1988년)’이, 1982년 일본에는 친미성향으로 평가받는 ‘나카소네 정권(1982~1987년)’이 등장하였다. 이후 세 국가는 경제·군사를 중심으로 전 분야의 협력을 증진, 약화되어 가는 사회주의진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문제로 화합의 어려움이 있는 듯 했으나, 1983년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1984년 히로히토 천황은 과거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 역사적인 공식 사과를 했다. 이 시기 동안 양국은 전례 없는 40억 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일본이 빌려준 총 40억 달러라는 수치는 당시 한국

외채의 13%, GNP의 5% 이상, 1983년 총투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의 신인도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박영대 2013, 100). 당시 미국, 일본, 한국 지도자의 상호방문도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준다. 나카소네는 1983년 1월 11일 일본총리로는 사상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1984년 9월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한국 대통령 최초의 일본 방문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4일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직후 198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하였다(매일경제 83/11/08, 1).

둘째, 조-중-소 관계는 1980년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는데, 특히 세 국가의 관계 변화에는 소련의 영향이 컸다. 1980년대 초 소련은 세 번의 지도자 교체를 겪었다.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오랜 기간 서기장을 지낸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고, 안드로포프(15개월, 1982.11~1984.2), 체르넨코(13개월, 1984.2~1985.3)의 짧은 통치를 거쳐 당시 54세의 젊은 서기장인 고르바초프(1985.3~1990)가 등장하였다(김학준 2005, 349). 중국과 소련 간에는 1970년대까지 국경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1982년부터 화해 모드가 조성되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었고, 3대 장막<sup>1)</sup>이 서서히 걷히며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증대됐다(모리카즈꼬 1990, 119). 브레즈네프의 사망 후 체르넨코 서기장은 1984년 김일성을 소련에 초청하였다. 1984년 5월 김일성의 소련 방문은 23년 만의 일로, 이후 북한과 소련 간에는 '국경조약', '군사원조', '경제협력'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졌다.

1982년 김일성의 70세 생일을 전후하여 북한과 중국의 고위인사교류와 각종 대표단의 상호방문이 활발해졌다. 1982년 4월 등소평과 후

1) 첫째, 중-소 국경과 중-몽 국경의 소련군 주둔, 둘째,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략에 대한 소련군의 원조, 셋째,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무력 침공.

야오방이 북한을 방문하고, 9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1983년 6월에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팡진과 당정대표단이 그해 9월 북한을 방문하였다. 1984년 4월 후야오방은 북한을 다시 방문했으며, 그해 11월에는 김일성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다. 1985년 5월에도 후야오방은 북한을 방문하였다(이종석 2000, 262). 1980년대 전반기 북한의 130여개 대표단이 중국을 친선 방문하였고, 같은 기간에 중국의 180여 개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특히 1985년 조선로동당창건 40돐 기념행사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35돐 기념행사에 수많은 중국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사회과학출판사 1987, 212-213).

1982년 중국은 북한에 A-5 전투기 20대를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1983년 북한은 중국이 청진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소련이 지배해 왔던 북한의 동쪽 해안에 중국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었다(하만경 외 1986, 199-200).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중국이 추구한 개혁개방으로 미국, 일본, 한국과 교류가 증가하자 북-중 관계는 소원한 시기를 겪게 되었다.

셋째, 한-미-일과 조-중-소 대립의 균열은 소련과 북한의 태도변화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국은 대(對)미 대(對)일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1984년 전국적인 인민공사(人民公社)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1980년대 초와 달리 1984년 이후, 소련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했으며, 일본과의 교류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또한 소련과 북한은 남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였다. 1981년 소련은 제네바회담에서 미국과 군축회담을 시작했으나, 서독정부는 1983년 11월 이틀간의 격렬한 의회토론을 거쳐 미 핵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소련은 제네바 군축회담을 완전히 결렬시켰다(그레고어 설겐 2003, 258). 소련은

1984년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였으며(강석호 1985, 237),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새로운 미·소 관계가 전망되었다. 1985년 소련은 남한의 체육경기에 소련선수들을 참가시키고 적극적으로 관계설정을 모색했다. 12명의 소련 스케이트 선수가 1985년 3월 서울 경기에 출전했고, 또한 9월의 세계유도선수권 대회에도 대표팀을 파견했으며, 10월의 양궁선수권 대회에서도 선수단을 보냈다(하만경 1986, 211). 북한도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미국·한국과의 3자회담, 대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간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의하는 한편, 3월 30일에는 올림픽 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대표단 회담을 제의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85, 122-123; 정규섭 1997, 180). 1984년부터 1985년까지 남북한은 5차례 경제회담, 3차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방문, 2차례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남북 체육회담을 진행했지만, 북한이 1986년 남한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1986년 1월 20일 모든 남북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전면 중단되었다(정규섭 1997, 180).

1983년에 발생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sup>2)</sup>과 북한의 '아웅산 사건'<sup>3)</sup>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실제 1984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종래의 '중요한 이해관계지역(a significant interest area)'에서 '사실적 이해관계지역(vital interest area)'으로 격상시키고 '방위의 제1선(the

2) 'KAI기 격추 사건'은 1983년 9월 1일 뉴욕을 출발해 앵커리지를 경유,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 보잉 747 여객기가 사할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3) '아웅산 사건'이란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의 수도 랭군(현, 양곤)에 있는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던 외교사절을 포함한 한국인 17명과 버마인 4명이 폭사하고 한국과 버마 양측 인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남한의 공식용어는 '버마 아웅산폭발사건'(출처: 대한민국외교연보)이며, 북한의 공식용어는 '랑군폭발사건'(출처: 조선중앙년감)이다. 하지만 학술지와 신문 등에서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예: 랑군폭발사건, 아웅산테러사건, 랑군폭발사건 등). 본 연구에는 '아웅산 사건'으로 지칭한다.

first line of defence)’으로서 서유럽과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선종률 2014, 69).

1983년 발생한 두 가지 테러사건으로 한·미·일 삼국은 군사부문의 협력과 지원, 합동군사 훈련 등 안보태세를 갖추었고, 소련과 북한도 군사부문 협력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동북아의 화해 모드가 시작되는 듯하였으나, 1986년부터 한반도 내에 한·미 군사훈련과 조·소 군사훈련이 진행된 것은 냉전의 기운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2. 소련의 국경협상 제안

소련의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어 유럽의 동부를 이루는 유라시아에서 시작되어 우랄산맥을 지나 아시아의 북부인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을 거쳐 태평양 연안까지 연결된다. 영토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태평양에서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시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북한과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북극해와 맞닿아 있다. 영토를 포괄하는 국경선은 전체 길이가 58,562km이다. 이 가운데 14,253km는 육지국경이며 38,807km는 해상국경, 7,141km는 강 및 하천 국경 그리고 475km는 호수국경으로 이루어져 있다(우준모 2012, 31).

1982년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 영해와 2백 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합의가 9월 조인되었고 1년 후 발효되었다. 4월 투표에서 미국은 반대표를 소련은 기권을 행사하였다(매일경제 82/05/01, 1). 1982년 소련은 11월 23~24일 진행한 소비에트최고회의 제10기 제7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선거와 함께 1983년 국가계획초안과 국가예산초안 심의, 국경법초안 및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83,

619). 이후 국경법을 1983년 3월 1일 시행, 인접 국가들과 해양경계를 확정하는 조약을 연이어 체결하였다(정인섭 2007, 62).

1985년 고르바초프는 중국에 영토분쟁의 해결을 직접 제안하였다(모리카즈코 1990, 127-128). 1982년 채택된 국경법에서 하천 국경은 “소련의 대외 조약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요 항로 중심선, 혹은 하상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조약의 실행은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등 국경 하천에 있는 700개 정도의 섬 대부분이 중국령으로 재편성됨을 의미했다. 소련은 중국과 1986년 10월 국경 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1987년 2월 국경 회담을 개시했으며, 1988년 10월 동부 국경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하였다(모리카즈코 1990, 221).

1984년부터 시작된 조·소 국경 및 해양에 관한 협상에 대해 국내의 언론과 일부 연구는 북한이 소련에 영해와 영공, 녹둔도를 제공하고,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통해 유엔의 해양법회의와 소련의 국경에 관한 제도 정비를 원인으로 소련이 북한에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종효는 그 과정을 더욱 자세히 언급하였는데, 소련의 국책연구소에서 조·소 국경선의 모순을 발견하고,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했을 당시, 소련 측에서 국경문제의 협상을 요청했으며, 김일성이 이를 수락하여 진행된 것으로 서술하였다(박종효 2010, 15-16).

### 3. 북한의 무역정책: 나진항과 청진항

1980년대 북한은 2차 7개년 경제개혁(1978~1984년)의 미진한 성과와 대외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영외교를 벗어나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의 확대발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외교정책 이념을 ‘자주·친선·

평화'로 체계화하였다.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10대 전망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자본주의국가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도 처음 언급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81, 66). 1984년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여 1970년대의 차관도입 형태가 아니라 북한 내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김계동 2012, 107).

북한은 직접무역 및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송능력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대외무역이 빨리 발전하는 요구에 맞게 짐배생산을 늘이고 강하천의 뱃길을 개척하고, 무역항들을 개건·확장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일성 1980, 1).

1988년 북한에서 나온 『조선지리지전서: 운수지리』(강필순 외)에서는 철도, 자동차, 수상 분야의 성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977년부터 1984년 동안 북한의 운수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여, 무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수상운수부문에서는 항만, 부두 시설들의 정비확장공사와 무역항들의 복구 건설 사업을 통하여 대형 선박을 비롯한 각종 배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무역항들과 항만들이 정비되고 뱃길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나라들과 해상무역을 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한편 대동강, 압록강을 비롯한 주요 강하천들에서 포

4)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철도 화물 수송량은 1.8배로 성장, 1,500km구간(전용선 포함)이 새로 전기화되었으며 전기기관차에 의한 견인 비중이 67%로부터 88.3%로 늘어나 철도 전기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또한 고원, 만포를 비롯한 여러 곳에 현대적 상하차설비를 갖춘 집중화물역과 화물장들이 새로 건설되었다. 제2차 7개년계획 수행기간 집중화물 수송은 1.6배, 짐할 수송량은 13배, 연대 수송량은 1.3배로 늘어났다. 계획수행기간 평양-원산 사이, 평양-남포 사이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도로들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자동차화물 수송량은 2.2배로 성장, 같은 기간에 선박화물 수송량은 2.8배로 성장하였다. 특히 남포항, 흥남항, 해주항, 송림항을 비롯한 무역항들이 개건 확장되고 대형 짐배들이 늘어나 대외화물 수송량이 5.1배로 늘어났다(강필순 외 1988, 88-89).

구시설들이 잘 정비되고 뱃길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여러 지역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철도망은 소련과 중국으로 운반되는 화물량의 급증을 수용하고 북한의 수출용 화물을 더 신속하게 항구에 수송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는데(조명철 2003, 32-33), 나진항과 청진항이 주목되었다. 1975년 10월 27일 북한과 소련이 '라진항에서의 소련 선박에 대한 봉사 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의 나진항 이용이 시작되었다(양태진 1985, 107). 이후 소련은 나진항의 확장공사를 지원하였고, 양국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오진용 2004, 38-39).

중국은 북한의 친소화를 비난하면서, 나진과 청진의 소련권 편입을 염려했다고 한다(북경방송 81/04/11; 오진용 2004, 48). 하지만 1983년 8월 27일 중국의 청진항 사용이 정식 조인되었으며, 이후 청진항을 통한 중국과 일본의 무역량 증대에 대해 1983년 9월 아웅산 사건 직후, 한국정부는 유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83/11/03, 1).

소련은 1984년 조·소관계의 긴밀화 과정에서 원산과 청진의 두 항구를 군사적으로 사용하고자 요청하였지만(경향신문 84/12/08, 4), 이후에도 청진항의 중국 사용은 지속 확대되었다.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인 중국 흑룡강성 대표단 진운 단장은 “북한의 청진항을 이용한 일·중공간의 무역 거래량은 지난 한 해 동안 6만~7만 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으며, “북한 청진항은 시설이 뒤떨어져 있으며 중공은 앞으로 청진항의 항만시설정비를 위해 북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매일경제 85/07/02, 3).

오진용은 중국이 동북지방에서 동해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가 청진항이기 때문에, 청진이 소련 쪽에 편입되는 문제에 예민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1980년대 10년 동안 중·소는 이 지역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2004, 42)고 평가하였

다. 최영일도 1983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다량의 MIG-21이 청진항 사용 허가에 대한 대가라고 언급하였다(2006, 32-33).

나진항과 청진항은 중국과 소련의 자연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경제적·군사적 지점이었다. 1980년대 북한은 두 항구에 대해 소련과 중국에 전략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북한의 무역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Ⅲ. ‘조-소 국경조약’ 내용과 영향

#### 1. ‘조-소 국경조약’ 내용 분석

‘조-소 국경조약’ 과정에서 맺은 관계서류는 총 세 가지로 1985년 4월 17일 조인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국경선에 관한 조약”(이하 국경조약)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국경선에 관한 명세서”(이하 국경조약 명세서) 마지막으로 1986년 1월 22일에 체결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조약”(이하 해양조약)이 있다.

국경조약은 총 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간략한 원칙만을 나열하고 있다. 조약 전문에 “조소 양국 간에 국경선을 확실히 규정하기를 희망하며”라는 문구와 2조에 “자연적인 변화가 본 국경선 규정에 변경을 갖고 오지 않는다는데 합의”라는 내용, 그리고 3조에 “분계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국경조약에 첨부된 5만분의 1 지도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국경조약 명세서에는 구체적인 지점과 방법, 표기를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국경조약을 통해 국경선의 길이가 변화하였다는 점

이다. 명세서의 마지막은 ‘조-소 국경조약’으로 합의된 국경과 해상의 길이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소련과 조선사이의 국경선 총 길이는 두만강의 16.93km와 해상의 22.2km를 포함하여 39.13km이다(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126).

박종효와 오진용이 인용한 <카피차의 회고록>에서 북한·소련의 국경은 두만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17.3km, 영해의 길이는 22km 이상으로 결정되고 승인을 남겨놓은 상태로 서술되었다(미하일 카피차, 21; 오진용 2004, 148; 박종효 2010, 17). 이는 명세서의 표시된 “국경선 총 길이는 16.93km와 해상의 22.2km”와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조선중앙년감 1966-67』 ‘지리 및 주민 부분의 변화’에 소련과의 국경선은 16.98km로 서술되어 있다(조선중앙통신사 1967, 141).

따라서 국경조약 이전까지 북한과 소련은 국경선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련은 북한과의 국경선을 17.3km로, 북한은 16.98km로 인식·표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경조약으로 인해 결정된 국경선의 길이는 북한이 기존에 표기했던 길이에 근접한 수치를 보인다. 1984년 11월 12일 평양에 도착한 소련 대표단의 국경선 제시에 북한 대표단이 재조사를 통해 더욱 정밀한 지도를 제시하고 이를 국경선으로 협의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박종효 2010, 16).

해양조약도 3조항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조약 전문에 ‘국제법’과 ‘유엔 해양법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소련이 맺은 국경관련 조약 중 유일하게 언급된 것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사이 우호 협력관계에서 출발하여, 양국 연안에 인접한 수역에서 자연

자원의 보전과 최적이용은 물론 다른 이익을 국제법에 따라 확보하려는 양국의 희망에 유의하며, 양 체약국이 서명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유념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안에 인접한 수역의 경제획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에 합의하였다(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126-127).

하지만 수역협정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소련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아닌 과도한 직선기선을 선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여 광범위한 수역을 내수로 편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북한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인섭 2007, 68).

마지막으로 ‘조-소 국경조약’은 소련의 급격한 군사적 지원이 동반되어, 그 대가로 소련에 북한의 영해와 영공의 군사적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양태진 1985, 105). 실제 이 시기 북한은 소련에 나진, 원산, 남포항의 기항권을 인정(<표 1>참고)하였으며, 1984년 말부터 소련 비행기의 항로 변화가 미국에 감지되기도 하였다. 라이온즈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1986년 11월 중국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이 1주일간 모스크바 방문을 끝내고 지난 10월 26일 평양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소련 비행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횡단하여 북쪽으로 비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상공을 거쳐 서해, 종지나해, 남지나해 상공을 나는 소련기들의 남쪽의 비행은 이미 전(1984.12)에 허용되었으나 북쪽으로의 비행은 일본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한이 베트남과 시베리아 사이를 비행하는 소련폭격기의 북한 상공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비행기의 항로를 수백 마일이나 단축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국방부 1987, 119; 최명해 2009, 371). 하지만 ‘조-중 국경조약’에 양 국의 ‘군용함정’의 자유로운 운항을 명시했던 것에 비해,<sup>5)</sup> 소련과의 국경조약과 수역협정에서는 그와 비슷

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약의 원문으로 확인된 점은, 첫째, 국경조약 이전까지 양 국가는 국경선 길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양 국가는 ‘국제법’과 ‘유엔해양법 협약’을 준수한다는 점을 서문에 넣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영해와 영공의 상호 이용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 ‘조-소 국경조약’ 이 북한에 미친 영향

1984년 ‘조-소 국경조약’ 체결의 순조로운 시작은 긴 시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 경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었다.

1984년 5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시 대두되었던 ‘조-소 국경조약’ 문제로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하일 카피차 소련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후 11월 26일 <조선과 소련사이의 조-소 국경선통과에 관한조약>을 가조약하고(로동신문 84/11/27, 4), 1985년 4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정식 체결하였다(로동신문 85/04/19, 3).

강성산 총리는 1985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고, 25일에는 <북한-소련간 1986~1990년 무역 및 경제협조 발전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 26일에는 <북한-소련간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북한-소련간 북한의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위한 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였다. 1985년 12월 2일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이 가조인되었고(조선중앙통신사 1986, 388), 1986년 1

5) “회담기요 4절 압록강 하구 강·해 분계선 박 동경 123도 59분부터 124도 26분 사이의 해역에서는 양국의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 항과 중조국경조약 제3조 제3항에서 언급한 ‘양국의 모든 선박’에는 당연히 군용 함정도 포함된다.”는 절에서 특별히 양국의 모든 선박을 강조하고 군용함정도 포함됨을 덧붙였다(박아름 2011, 47).

월 22일 <조선과 소련사이의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과 <조선과 소련사이의 공민들의 호상여행에 관한 협정>이 22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로동신문 86/01/23, 3). 1986년 2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아리스토프 소련대외무역 부장과 최정근 북한 무역부장은 <북한-소련간 1986~1990년 장기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로동신문』은 1986년에 맺은 조약이 1984년 5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시 최고위급 상봉과 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강조하였다(로동신문 86/01/24, 2).

### 1) 해운분야 활성화

김일성은 1979년 1월 21일 남포항에서 “무역항을 현대화하고 항 관리 운영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다(고현철 2008, 28). 이후, 1980년 8월 10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해운분야 최초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이하: 해운법)을 채택하였다(법률출판사 2004, 930). 그리고 1986년 9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1호로 5개장 70조로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이하: 항만법)을 채택하였다(법률출판사 2004, 774)

항만법은 소련과 수역협정을 맺은 같은 해에 발표된 것으로 항만분야 최초의 법령이다. 항만법은 해운법에 비해, 항구에 집중된 내용을 보인다. 하지만 해운법과 항만법에서 비슷한 조항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 (해운법 1980)

제9조(해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64조(배길안내)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배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배길안내를 받을수

있다. 배길 안내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법률출판사 2004, 930-947).

(항만법 1986)

제7조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 사업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37조 다른 나라 배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항에 어느 때든지 드나들 수 있다.

제38조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려는 다른 나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법률출판사 2004, 774-783).

해운법 제9조에서 “다른 나라”라고 표기되었던 부분이 항만법 제7조에서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로 한정되었다. 반면, 타 국가 선박의 출입에 대해서는 해운법 제64조에서 출입을 위한 “배길 안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항만법 제37조와 제38조에서는 북한 국기를 달아야 한다는 조건 외에는 “어느 때든지 드나들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1980년에 제정된 해운법에 비해 1986년에 제정된 항만법은 타국가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율성은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에만 주어지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 대상은 ‘소련’ 혹은 ‘중국’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소련과 해양조약을 맺은 후 동해안과 서해안의 원유탐사를 공동으로 진행<sup>6)</sup>한 점, 소련의 군함이 북한 항구에 정박하게 된 점, 소련과의 무역거래가 급증한 점은 그 대상이 ‘소련’이었음을 말해준다.

6) 강성산이 모스크바에서 석유탐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소련은 신속하게 석유탐사선(1,134톤)을 북한에 파견했고, 1986년 1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사기간 67일 예정으로 동해안 전 해역 약 4.5km<sup>2</sup>에 대한 석유탐사 작업을 실시했다(오진용 2004, 164).

북한은 1986년 4월, 교통운수부문에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늘어나는 수송 수요를 해결한다는 목적 하에 정무원 지시 제22호로 교통운수위원회의 기구를 일부 개편하였다. 교통위원회의 육해운부를 없애고 그 대신 위원회 직속 육운총국과 해운총국을 개설하였으며 철도부 아래의 철도국기구를 개편하였다. 이후 북한은 해운총국 아래에 서해기선회사(남포시)와 동해기선회사(청진시)를 두고 해상무역 수송을 진행하였다(강필순 외 1988, 91).

실제 1980년대 후반, 북한의 항구는 무역의 활성화와 어선의 건조 등 활발한 성과를 보였다. 『조선중앙년감』에 1980년대 매해 기록된 운수부문의 성과에서, 1989년까지 이르는 10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무역항화물 통화능력은 근 6배, 배의 적재능력은 수십 배로 늘어났고, 대외 무역화물수송량은 이 기간 무려 14배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시기 북한의 항구는 중·일 무역의 중계무역으로 역할이 높아졌다. 또한 소련이 1985~1986년 기간에 단천항 건설에서 5만 톤급 선박 접안부두 건설사업과 청진조선소에 2.6만 톤급 선박 건조를 5만 톤급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보도되었고(오진용 2004, 161), 공동의 해양탐사를 벌이고,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련과 다방면의 활발한 협력을

---

7) 1987년 룩해 운수 부문에서는 자동차와 배에 의한 화물수송계획과 려객 수송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배에 의한 무역화물수송이 강화되었으며 철도와의 연대수송이 발전하여 연대화물 수송량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대형집배에 의한 동서부 교류물동수송과 자동차에 의한 소화물수송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철도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다. 1988년 룩운총국에서는 연간 화물수송계획을 두 달 반 이상 앞당겨 끝냈고 해운부에서는 12월 16일까지 연간 무역선박화물수송계획은 131.7%, 국내선박화물수송계획은 115%, 무역항 화물 통과량 계획은 106.9%로 완수하였다. 1989년 현대적인 무역항인 청진 동항에 1만 미터 철도인 입선공사가 진행되고 100톤 기중기를 비롯한 20여대의 능률적인 항만기중기들과 기계설비들이 설치되어 항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임으로써 이해에 15년 전에 비하여 화물 통과량은 2.5배, 화물보관량은 2.9배로 늘어났으며 배들의 정박일수는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무역항화물 통화능력은 1989년까지 이르는 10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근 6배, 배의 적재능력은 수십배로 늘어났다. 결과 대외무역화물수송량은 이 기간 무려 14배로 늘어났다(조선중앙통신사 1988, 185; 1989, 233; 1990, 148).

보였다.

## 2) 대외군사관계 확장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국경협상을 표면으로 한 양국의 고위 인사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실제 그 가운데 군사적 지원에 관한 협의가 중점에 놓였다. 소련은 MIG-23 및 25기, T-72탱크와 SA-6 및 SA-8과 같은 신형지대공미사일 등의 최신정밀무기를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등 신소아랍국들에게는 대량으로 공급하였으나, 당시 북한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정진위 1985, 206). 1984년을 기점으로 소련은 기존까지 들어주지 않았던 북한의 요구인 최신 무기의 제공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에 합의하였다.

1984년 5월 소련은 북한에 사정거리 300km의 지대지 스커드 미사일을 양도하고, 동년 11월에는 당시 소련 외무차관 카피차가 MIG-23, T-72탱크, 신형 헬기 등 최신예 무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과 북한의 군사밀착은 가속화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이른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 이후 조-소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하였고, MIG-23 50대,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AA7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의 기술자 및 정보요원이 소련에서 기술 훈련을 제공받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에는 군사지도자 상호 교환 방문, 전폭기 교환 비행, 함대 교환 방문 등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 1986년과 1987년 일본 근해에서 대규모 해군 합동훈련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1988년에 오면 양국 간의 군사협력은 최고조에 달하는데 양국 간 군수뇌부의 몇 차례 교환 방문이 이뤄지면서 동년 6월 북한은 소련의 최신예 전투기인 MIG-29기 12대를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소련은 최신예 무기 제공과 함께 북한의 해군 및 공군기지 사용권을 계속 보유하였다(최영일 2007, 36).

〈표 1〉 구소련의 대북한 무기 이전

연도	이전무기명	수량	소련의 요구수락사항
1981	Frog-5/7 지대공미사일	15	
1982	MOG-21 전투기 MI-4 헬기	40 20	
1983	IL-62 수송기 Osa-1 급 고속공격정	1 2	
1984	SA-2 지대공미사일	550	TU-16/95 정찰 및 폭격기의 북한내륙통과 비행 및 기착권 인정(84.12)
1985	MIG-23 전투기 SCUD-B 지대공미사일 SA-3 지대공미사일	50 15 30	나진항에 이어 원산항 기항권 인정(85.8)
1986	SU-7 전투기 MI-24 헬기	10 50	남포항 기항권 인정(86.7)
1987	SU-25 근접지원기 SA-5 지대지미사일	10 미상	

출처: 정영태(1996, 39).

한편 1980년대 후반 북한은 중동과 군사교류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이 중동에 수출되었으며, 전략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중동지역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중동지역과 주변지역에 배치된 미군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중동지역은 같은 이슬람교인 데도 지역 내 친미국가와 밀접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파키스탄에 대한 경계와 이들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 400~500km 북한제 미사일 수입은 절실한 입장이었다. 이후 북-중동 국가들의 국제관계는 전략무기 체계개발을 위한 협력동반자관계로 더욱 발전했으며, 이러한 관계 진전은 일부 국가들의 조정과 변경을 제외하고는 탈냉전 직전까지 일관성을 유지했다(김주삼 2010, 44-45).

이 시기 북한제 미사일의 성능 향상과 기술 생산력의 원천은 소련으

로부터 이전된 무기와 기술에 있었다.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스커드 미사일을 받았다는 많은 미확인 보도가 있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소련이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약 240개의 스커드 B 미사일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소련의 원본과 현저히 유사하며, 원래 스커드 로켓 모터가 사용되었다(Bluth 2011, 178)고 한다. 또한 소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촉매가 되었다. 북한은 이미 영변에 자체적으로 핵폭탄 제조원료인 플루토늄 Pu-239를 생산할 수 있는 제2원자로(3~4만 kW급)를 건설 중에 있었는데, 소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은 비교할 수 없는 소득이었다(오진용 2004, 163).

국경조약 체결시기 발생한 조-소 군사관계 밀착은 소련 군함의 북한 항구 사용과 동해상에서 최초로 이뤄진 조-소 군사훈련으로 중국의 우려를 자아내었다. 조-소 국경조약 당시 소련의 공군기들은 북한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태평양 항로는 중국에 대한 정찰비행에 이용되었다. 정찰비행은 만주산업기지, 보해만과 서해의 해상통로, 칭다오에 있는 북양함대기지 등을 포괄하였다(하만경 외 1986, 200-202). 조-소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도 1986년 10월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방중을 통해 미 태평양함대의 칭다오기항을 승인했다. 이는 1949년 5월 미 해군 정비함 디시호가 중공정권 수립 5개월을 앞두고 칭다오를 떠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중대 사건이었다(국방부 1987, 249-250; 최명해 2009, 358).

1980년대 후반 중소관계의 회복과 소련 및 중국의 서울올림픽 참가로, 북한은 대(對)중 소와 소원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 대외군사관계를 확장하고, 미사일 수출과 군사적 협력을 증진시켰다. 특히 이 시기 소련에서 얻은 최신 무기와 군사훈련을 발판으로 대미접근의 길을 열었으며, 대외군사 관계를 확대시켰다. 김

주삼은 이에 대해 북한의 외교정책이 전략전술 방면에서 모두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김주삼 2010, 42-43).

### 3) 대외무역의 성장

1980년대의 북한의 경제상황 중 대외무역을 파악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는 자료의 접근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가 1990년 또는 200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들도 1990년 이후의 통계를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미리 밝히고, 본 연구에서는 1차 자료의 분석이 아닌, 유엔의 통계를 이용해 1960~1990년까지의 북한의 대외무역을 분석한 박로경(2001)의 글을 참고하였다. 박로경은 유엔의 통계를 통해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를 국가별, 상품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비율별’로 나타내었다.

1980년대 북한 대외무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980년대 북한의 수입상품은 기계류, 장비류, 석유류 제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의 자본시설 및 기술수준의 낙후를 알 수 있다. 둘째, 1980년대 수입과 수출에서 소련이 중국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셋째, 1980년대 상반기의 무역은 침체되어 있으며, 하반기의 급격한 상승은 소련으로부터의 대규모 수입의 영향이었다(박로경 2001, 96).

1980년대 북한의 무역은 소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2년과 1985년 소련의 점유율은 중국의 점유율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점유율이 중국의 점유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 개발도상국의 점유율은 소폭이지만 꾸준한 상승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표 2> 참고).

〈표 2〉 북한의 연도별 무역점유율 (단위: %)

지역/연도	1978	1982	1985	1988
기타공산국	2.24	3.85	3.39	3.09
중국	22.85	21.53	15.86	19.58
소련	34.03	40.20	42.36	27.63
OECD	8.57	5.51	7.61	13.94
개발도상국	11.06	12.06	15.79	17.74
일본	19.64	17.32	15.29	18.92

출처: 박로경(2001, 91); 필요한 연도만 필자 편집.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1988년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소련에 대한 수출은 1978년부터 서서히 증가를 유지하였다(<표 3> 참고).

〈표 3〉 북한의 지역별 수출점유율 (단위: %)

지역/연도	1978	1982	1985	1988
기타공산국	2.32	4.30	4.25	2.48
중국	20.89	26.88	25.21	13.69
소련	26.19	42.15	44.10	47.62
OECD	5.16	4.65	2.70	4.58
개발도상국	36.47	9.46	11.02	14.34
일본	8.98	12.56	12.70	17.29

출처: 박로경(2001, 89); 필요한 연도만 필자 편집.

북한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소련에 대한 수입은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증가하였다(<표 4> 참고).

〈표 4〉 북한의 지역별 수입점유율 (단위: %)

지역/연도	1978	1982	1985	1988
기타공산국	2.16	3.49	2.67	3.63
중국	25.43	19.61	18.49	17.77
소련	24.99	27.48	36.98	37.75
OECD	12.11	11.72	7.82	10.26
개발도상국	13.08	12.35	12.92	17.07
일본	22.23	25.34	21.11	13.52

출처: 박로경(2001, 89); 필요한 연도만 필자 편집.

1985년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실패로 2년간의 조절기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 소련과 경제적인 협정을 맺고 지원을 받게 되었다(김성보 외 2013, 296). 그 결과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1~1984년 시기에 비해 1985년부터 가파르게 성장했다. 1985년 가파른 성장에 대해 박로경의 평가와 동일하게 북-소 경제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임강택은 1985~1989년은 북한이 소련과 정치적으로 밀착된 시기로, 북한의 대서방 무역은 1984년 9억 3천5백만 달러에서 1989년에는 12억 3천만 달러로 32% 증가한 데 반하여, 소련과의 무역은 1984년 8억 4천만 달러에서 1989년에는 23억 7천만 달러로 183%나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1998, 70-71). 이영훈은 1980년대 후반 북한의 높은 소련의존도가 소련과 소원해지는 1990년대부터 북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다(2006, 115).

또한 1980년대 북한의 외채현황을 통해 소련의 막대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1981년 북한은 소련에 대한 7억 달러의 외채가 있었는데, 1989년에는 31억 4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시기 중국에게 3억 달러의 외채가 9억 달러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의 전체 외채는 1981년에는 30억 달러, 1985년에는 34억 6천만 달러였던 것이 1989년에는 67억 8천만 달러가 되었다(임강택 1998, 31). 따라서 1980년대 북한의 외채가 두배 이상 증가된 내역의 대부분은 소련의 지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박로경의 연구 중에 흥미로운 점은 1980년대 북한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대하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감소한 수입 부분과 일치했다는 점이다(박로경 2001, 97). 따라서 북한은 1990년대 경제 몰락에 대해 대중국, 대소련 관계변화 속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북중 관계의 소원화에 대해 개도국이라는 대체국을 모

색하였고, 소련의 지원으로 경제적 붕괴를 좀 더 연장시키며 충격을 완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서론에서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조-소 국경조약'은 왜 1980년대 중반에 체결되었는가? 직접적 원인은 당시 유엔과 소련이 국경과 해양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소련이 타 국가와 국경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련 측이 북한에 제시한 것이다. 또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의 국내적 상황과 공통분모가 형성되었다. 무엇보다 1980년대 동북아 신냉전의 기류와 1983년의 두 가지 테러 사건이 조-소 관계의 밀착을 형성하여 국경문제를 우호적으로 진행시킨 배경으로 작동하였다.

둘째, '조-소 국경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조약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으며, 체결과정에서 양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국경선 길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국경선과 해양경계의 설정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제법과 유엔해양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해양조약 서문에 강조하였다. 한편 조약문 자체에 영공과 영해에 군사적 이용을 포함한 상호 이용 여부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조-소 국경조약의 영향은 무엇인가? 국경조약이 발생한 시기 북한에서 해양 분야의 활성화와 대외군사관계의 확장, 대외무역의 성장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소 국경조약'의 원만한 합의가 만들어 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북한의 해양 분야는 법의 정비, 항구의 확대, 해운능력 향상으로 활발한 대외무역을 뒷받침하였으며, 소련과의 해저탐사와 선박건조 등을 진행하였다. 소련의 군사적 지원

으로 북한은 국내적으로 미사일개발과 수출, 핵개발에 주력하였고, 동해안에서 조·소 군사훈련과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동북아에서 냉전의 긴장감이 이어졌다. 이 시기 북한은 NPT에 가입하였고, 이후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과 동북아 안보의 최고 의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소련의 막대한 지원으로 대외무역을 급격히 확대시켰고, 개도국과의 무역거래를 확장하여 중국과의 소원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4년, ‘조·소 국경조약’의 평화적인 체결로 시작된 북한과 소련의 긴밀한 관계는 경제분야, 군사분야의 협력과 소련의 막대한 지원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수출, 무역의 대체국을 모색하여 사회주의권 해체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투 고 일: 2017년 07월 19일

심 사 완 료 일: 2017년 08월 25일

계 재 확 정 일: 2017년 08월 25일

## 참고문헌

- 강석호 역음. 1985.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대땅뜨-』. 서울: 거름.
- 강필순 외. 1988. 『조선지리지전서: 운수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고현철. 200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외무역집수송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54(2): 24-28.
- 그레고어 설겐 저·김현성 역. 2003. 『빌리 브란트』, 서울: 빗살무늬.

- 김계동. 2012.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 서울: 명인문화사.
- 김성보·기광서·이신철 지음. 2013.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증보판)』.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김주삼. 2010. “북한의 대 중동군사외교: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5(2): 39-60.
- 김학준. 2005. 『러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
- 노영돈·이현미. 2010.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체제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87: 289-322.
- 모리카즈코 지음·김하림 옮김. 1990. 『중국과 소련: 그 300년의 역사 그리고 사회주의는 재생할 것인가』. 서울: 사민서각.
- 박로경. 2001.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분석: 1960~1990.” 『한국동북아논총』 19: 79-100.
- 박아름. 2011. “‘조-중 국경조약’ 체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영대. 2013.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 ‘신냉전’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종수. 2011. 『21세기의 북한과 러시아』. 서울: 오름.
- 박종효. 2010. “두만강 유역의 조·러 국경 성립과정과 북·소 국경조약.” 제 34차 한국유라시아협의회 세미나(2010.5.18.) :1-25.
- 법률출판사.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자료, 북한-러시아 국경 및 해상경계에 관한 협정.” 『서울국제법연구』 14(1): 123-147.
- 선종률. 2014. “남북한의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안재섭. 2004. “두만강 하류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

회지』 38(2): 155-165.

- 양태진. 1985. “북한·소련 국경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북한』 4: 100-107.
- 오진용. 2004.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출판.
- 우준모. 2012. “러시아의 영토의식과 지정학적 경제설정: 중국과의 국경 설정 사례분석.” 『국제지역연구』 16(1): 29-49.
- 이영훈. 2006.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경제』. pp. 95-139. 서울: 경인문화사.
-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 임강택. 1998.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정규섭. 1997.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 정영태. 1996. 『북한과 주변 4국의 군사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정인섭. 2007. “통일후 한러 국경의 획정.” 『서울국제법연구』 14(1): 55-88.
- 정진위. 1985. 『북방삼각관계-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법문사.
- 정희석. 2002. “러시아 연방의 국경문제.” 『대한정치학회보』 10(1): 59-90.
- 조명철. 2003.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선중앙통신사 편. 1967.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1981.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1983.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1986.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1988.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1989.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 \_\_\_\_\_. 1990.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 최명해. 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역사』. 서울: 오름.

- 최영일. 2007. “북-중 동맹관계와 군사협력관계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하만경·린다젠슨. 1986. “8. 소련의 대북한정책.” 박재규. 『북한의 대외정책』. pp. 189-215.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 Bluth, Christoph. 2011.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Origins, Capabilities and Future Trajectories.” 『유라시아연구』 8(4): 173-195.
- 김일성. 1980. “신년사.” 『로동신문』 (1월 1일).
1982. “국제해양법 조약 채택.” 『매일경제』 (5월 1일).
1983. “일-중공 무역루트 청진항 이용 항의.” 『동아일보』 (11월 3일).
1983. “4일간 日서 머문 뒤 12일 서울에 레이건 韓·日 방문 登程.” 『매일경제』 (11월 8일).
1984. “카피차 외무차관, 북한 방문 중 소, 북한에 합동군사훈련 요청 통일 일보 보도.” 『경향신문』 (12월 8일).
1984. “우리 나라와 소련사이의 조소국경선통과에 관한 조약이 가조인되었다.” 『로동신문』 (11월 27일).
1985. “우리 나라와 소련사이의 국경선통과에 관한 조약과 령사협약 체결.” 『로동신문』 (4월 19일).
1985. “청진항 이용 일·중 무역 작년6~7만톤 달해.” 『매일경제』 (7월 2일).
1985. “소, 북한서 어선건조.” 『동아일보』 (12월 27일).
19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사이의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 체결.” 『로동신문』 (1월 23일).
19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 사이의 공민들의 호상여행에 관한 협정 조인.” 『로동신문』 (1월 23일).
1986.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외무상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조소공동컴뮈니케 발표.” 『로동신문』 (1월 24일).

Abstract

---

## Analysis on The Border Treaty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iet Union in 1985

Park ah reum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In 198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oncluded a treaty on the border with the Soviet Union and entered into an agreement on the ocean in the following year.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 background, contents, and effects of the 'The Border Treaty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iet Union' in the 1980s. Through this, this study was to provide a meaningful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Northeast Asia before the collapse of Communist Nations and DPRK's response.

First, under the background of new cold war era in Northeast Asia in the 1980s, the cooperation of DPRK and the Soviet Union was enhanced and the border negotiations were concluded with the proposal of the Soviet Union.

Second, the contents of the border treaty were relatively simple and identified the difference in the length of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ocess of conclusion and clarified the setting of the

border line and maritime boundar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information on mutual use including military use in the airspace and territorial waters in the Treaty itself.

Third, during the period when the border treaty occurred, the activation of the maritime sector, expansion of foreign military relations, and growth of foreign trade were identified in DPRK. These were accomplished based on the favorable atmosphere created by the amicable agreement of 'The Border Treaty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iet Union' for DPRK.

Since then, DPRK has eased the impact of the collapse of Communist Nations through increased exports of missiles toward Middle East and increased trade with developing countries.

**Keywor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North Korea, Soviet Union, The Border Treaty betwee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iet Union, Northeast Asi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oviet military alliance.